



**감염병 신고·보고체계**

**법정감염병 신고**
**신고의무자**

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 장  
 부대장

그 밖의 신고자 : 제 1군 감염병(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 포함)이나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/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, 다수인 집합하는 장소는 그 기관의 장, 관리인, 경영자 & 대표자

**신고시기**

가. 제1군, 제2군, 제3군, 제4군 : 즉시

감염병환자, 의사(擬似)환자,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

감염병환자 사체를 검안했을 때

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

나. 제5군감염병, 지정 감염병, 표본감시감염병: 7일 이내 신고

감염병환자, 의사(擬似)환자,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

**신고방법**

감염병 환자 또는 사체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(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)

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(인터넷, 서면, 구두, 전화, 팩스 등

영암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: ☎ 470-6534~6, FAX 470-6576)

**미신고시 행정처분**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의사, 한의사, 군의관,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**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운영**
**목적**

각종 감염병의 연도별, 지역별, 계절별 발생양상을 신속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**지정대상 : 병·의원, 약국, 사회복지시설, 학교(보건교사), 이장 등으로 구성**

하절기 비상근무 : 5. 1 ~ 9. 30( 5개월)

평일09:00 ~ 18:00, 토·일요일, 공휴일은 재택근무 실시

**법정감염병 신고**

**편 성 : 1개반 8명(의사, 간호사, 세균검사요원, 소독요원, 위생관리요원, 행정 요원, 운전요원 등)**

**임 무 : 환자발생 즉시 출동 역학조사, 소독등 방역조치**

**모니터요원 주요업무**

감염병(의사)환자 발견, 가검물 채취(병·의원)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파악 통보

기타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보건소에 전화통보

감염병예방을 위한 주민 계몽

##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

**목적** :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제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

**대상** : 관내 의료기관 (병,의원), 의·약 단체 등

### 신고방법

의료기관의 감염병(의사)환자 진단 시 즉시 보건소에 보고토록 신고체계 확립 제1군, 제2군, 제3군, 제4군 감염병 → 진단즉시 인터넷 또는 팩스 통보

##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 운영

### 목적

생물테러가 의심되는 증후군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생물테러 가능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한  
수인성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여 조기 대처하기 위한

### 보고대상

생물테러 가능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후군 환자 / 수인성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급성 설사 환자

##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

### 목적

감염병의 전수보고가 어렵거나(인플루엔자, 성매개감염병) 감염병 관리를 위해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(인플루엔자, 지정감염병)에 대해서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·분석하여, 국민·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증진과 감염병 예방 활동을 지원

**대상** : 3군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, 5군감염병, 지정감염병

**신고주기** : 진단 후 7일 이내

### 표본감시 결과 환류

감염병발생정보지(CDMR) 월1회 배부 - 감염병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제공 (<http://www.cdc.go.kr>)

## 감염병환자 격리 및 치료

**제1군감염병진료기관** : 종합병원, 병원, 한방병원

### 환자 치료

제1군감염병환자는 즉시 격리치료(A형간염은 별도 지침에 따름)

의사환자/확진자의 경우 확산 등 예방적인 강제격리 조치로 치료와 관련된 기타치료비용은 도와 국가가 공동부담

## 수인성·식품매개 감염병 환자 격리해제 기준

콜레라,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: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2회 대변 배양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 
장티푸스, 파라티푸스 :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3회 대변배양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